

석좌교수 운영세칙 신규대비표

현행	개정(안)	사유
<p>제3조(종류) ① 석좌교수는 대학의 <u>석좌기금에 의한 POSTECH석좌교수와</u> 정부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에 의한 출연석좌교수로 구분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신설)</p> <p>② <u>출연석좌교수는 자격에 따라 일반석좌교수와 젊은석좌교수로 구분한다.</u></p> <p>③ <u>출연석좌교수의 경우에는 출연자의 명의를 붙일 수 있다.</u></p>	<p>제3조(종류) ① 석좌교수는 대학의 기금으로 운영하는 대학석좌교수와 정부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에 의한 출연석좌교수로 구분한다.</p> <p>② 대학석좌교수는 자격에 따라 POSTECH석좌교수와 POSTECH초빙석좌교수로 구분한다.</p> <p>③ 출연석좌교수는 연령 등을 고려하여 젊은석좌교수를 들 수 있다.</p> <p>④ <u>출연석좌교수의 경우에는 출연자의 명의를 붙일 수 있다.</u></p>	<p>-단순 문구 수정</p> <p>-석좌교수 종류 재정립</p> <p>-단순 문구 수정</p>
<p>제4조(자격) ① <u>일반석좌교수는 국제적으로 인정 받는 탁월한 연구업적을 쌓은 저명한 학자 또는 과학기술자이어야 한다.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신설)</p> <p>② <u>젊은석좌교수는 40세 전후의 교원으로 국제적으로 탁월한 연구업적과 해당분야 우수과학자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자 이어야 한다.</u></p>	<p>제4조(자격) ① <u>석좌교수는 국제적으로 인정 받은 탁월한 연구업적을 쌓은 저명한 학자이거나, 해당분야 우수 학자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자 이어야 한다.</u></p> <p>② POSTECH석좌교수는 본 대학에 재직중인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하고, POSTECH 초빙석좌교수는 국내외 저명 학자 또는 인사를 대상으로 한다.</p> <p>③ 젊은석좌교수는 50세 미만의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.</p>	<p>-자격범위 확대</p> <p>-석좌교수 종류 재정립에 따른 자격 명시</p> <p>-문구 단순화</p>